【 하이시민안전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상해

2. 보험종목의 명칭 : 하이시민안전보험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 및 기업관련 각종 비용 손해
   라. 상실이익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가.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 또는 3년 내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보험료 납입주기 : 일시납, 분납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7. 기타
   가. 자동대출납입 : 해당 없음
   나. 보험료의 반환 :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 :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보험계약대출 :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마. 단체계약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한하여 판매한다.
   바. 회사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의 한도는 피보험자별로 2억원 이내로 하며, 보험만기 및 보험나이(가입시점)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아. 회사는 만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판매할 수 없다.
   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특정단체용)의 적용 및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동 특약의 부가는 아래의 특정단체가 피보험자 세부 명단 없이 그 단체에 소속된 특정 대상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특정단체 :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및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보험 가입시 사전에 피보험자의 특정이 불가한 단체
      2) 회사는 단체계약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개별 명단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을 위한 피보험자수에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다.
      3) 회사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한 경우 피보험자 수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다.

차.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포함)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카. 아래 특별약관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기후재해 상해( )주이상 진단보장 특별약관

타. 아래 특별약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계약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기후취약계층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기후특보 교통비보장 약관

파. 기후재해 상해( )주이상 진단보장 특별약관 및 기후특보 교통비보장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은 아래를 한도로 한다.

구 분	가입금액 한도
기후재해 상해( )주이상 진단보장	1사고당 30만원
기후특보 교통비보장	1회당 2만원